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3. 6 선고 2023가단4309 판결 [건물명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21.

판 결 선 고 2024. 3. 6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 
나. 2024. 2. 4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소장의 ‘청구원인’란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전호재

별지